차량등록기준 심사 요청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자우편(e-mail)	
주 소			

▣차량 등록 기준

차종		운행방식	운영기준
〔 〕장애인용 자동차			- 장애인의 경우 - 3,683만원 이내
〔 〕유자녀용 자동차			- 임산부나 만6세 미만의 영유아와의 동반을 위한 신혼부부 - 3,683만원 이내
생업용	〔 〕자동차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시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	- 화물 물품 등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 등의 작업으로 도구를 차에 싣고 현장을 다니며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 다만, 청년주택에서 건설하는 주차장 형태와 규모(주차장 입구 높이 면적등)에 따라 운행 가능 - 3,683만원 이내
	〔 〕이륜차 (125cc이하)	택배 및 배달용 ※ 필수주차장 수량과 무관	- 택배 및 배달용에 한하며 주차장 형태와 규모에 따라 운행 가능 - 3,683만원 이내

※ 자동차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별 1대만 등록 가능함.

상기 본인은 "신길역 준타워(청년주택)" 청약 및 계약, 입주시에는 물론, 입주 후에도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운행 또한 불가함을 인지하였으나, 상가 차량등록기준에 따른 차량을 보유하였음에 차량등록기준 심사를 요청합니다.

향후 심사에 따른 판정 내용에 따라 차량등록기준에 부적합한 차량 보유 등으로 당첨 및 계약의 해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귀사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정자서명 또는 인)

신길역 준타워 (청년주택) 귀중